

승합세율을 적용하려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2004년까지 승합세율 적용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1년 이후에 새로이 승용자동차로 등록하는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2000.12.31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동차 분류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그 개정내용을 보면 동 부칙 제5조 본문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등록세·면허세”를 “등록세”로, “제132조의2·제164조”를 “제132조의2”로 하고, 동조제1호중 “2000년”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 7~10인승에 대한 자동차세등 세율적용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제5조 개정

2001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는 2000.12.31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나 2001.1.1 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나 그 등록구분에 관계없이 2004년까지는 등록세나 자동차세의 과세기 지방세법에 의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형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